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2나3045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2나304552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18 선고 2019가단125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범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6. 2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18. 선고 2019가단125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6,749,8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49,8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행의 “가액을 상회한다”를 “가액을 상회한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11. 1. 현재 시가가 356,009,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0. 1. 160,000,000원에 매매되었는데, 그 후 개발도 되지 않은 임야상태에서 불과 2년 반이 채 지나지 않은 2018. 8. 23.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3.75배나 과도하게 상승한 것이 납득되지 않으며, 매도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업계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

별지